

EU 집행위, 조사현장 봉인 훼손행위에 과징금 부과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5월 24일, 프랑스 에너지기업인 Suez Environment와 그 자회사인 LDE(Lyonnaise des Eaux France)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하여 8백만 유로(약 1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DE는 2010년 4월 EU 경쟁총국이 유럽지역 상하수도 설비제공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에 대하여 기습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설치한 봉인(Seal)을 훼손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호아킨 알무니아(Joaquin Almunia)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조사”는 카르텔의 존재 및 내용을 입증하고 제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법집행절차이기 때문에 피조사기업이 봉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행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8년 1월, 독일 에너지기업인 E.ON의 봉인훼손행위에 대해 3,800만 유로(약 5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E.ON이 법원에 했지만 기각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집행위원회가 체코의 전력회사인 J&T Investment Advisors와 Energeticky a Prumyslovy Holding의 이메일 계정 봉쇄, 이메일 암호 해제 방해, 수신 메일 분산 등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EU의 조사권 및 조사방해 관련 규정

- 집행위원회는 반경쟁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장 출입, 자료 열람 및 복사, 조사현장의 봉인권한을 가지며, 허위·오인성의 자료 제출 및 진술행위, 봉인 해제 등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규칙[Council Regulation No 1/2003] 제20조 및 제23조)
- 한편 EU 경쟁총국은 통상 피조사기업 내에 조사현장을 갖추어 증거물을 수집·분석하고 조사 중지시 봉인을 부착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동 봉인은 강한 접착식 플라스틱 필름형태이며, 봉인을 뜯으려 할 경우는 표면에 'OPEN VOID' (개봉 무효)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계 기업의 가격법 위반에 벌금 부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1년 5월 6일, 삼푸 및 바디워시 등 관련 제품가격 인상을 사전에 발표한 헤어·바디용품 회사인 Unilever에 대해 2백만 위안(한화 약 3억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격법 제14조 및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 제6조에 근거한 것이다.

NDRC가 Unilever의 가격법 위반에 벌금을 부과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NDRC는 지난 3월에 Unilever, P&G 등 생활용품업계의 주요 기업을 만나 물가안정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Unilever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4월 1일부터 제품가격을 인상할 예정임을 알렸고, 이에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관련 제품의 평소 판매량의 10배에 달하는 '사재기'가 발생했다.

이후에 NDRC는 이를 시장의 가격질서를 교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동 행위에 대한 중국 반독점법상 벌금상한은 연간 매출액의 10%이지만, Unilever가 외국계 기업인 점과 가격 인상을 중단하기로 한 점, 그리고 소비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책정했다.

이번 결정은 NDRC가 가격법 하에서 외국계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로, 가격 인상정보를 사전에 알려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DRC의 조치 이후인 지난 5월 25일, Unilever가 원자재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삼푸 및 바디워시 제품의 가격을 일제히 5~10% 인상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심사지침(초안) 제정

중국 상무부(Mofcom)는 2011년 6월 2일, 기업결합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재고하기 위해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심사에 대한 지침'(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심사지침의 초안은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동 지침은 반독점법 제27조에 규정된 경쟁제한성 여부 심사시 고려사항의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장점유율 측정시 HHI 지수와 시장점유율 합계(CRn) 등을 이용하고, 일부 국제적인 모범 관행을 반영해 동 지침을 제시했다.

경쟁제한성 심사지침 주요내용

- ① 시장점유율 : 시장의 경쟁상황, 대체 가능성, 경쟁자의 생산능력, 결합 당사회사의 자금규모와 기술조건 등을 고려
- ② 시장집중도 : HHI 지수, 시장점유율 합계(CRn) 등을 이용해 파악
- ③ 시장 진입장벽 : 잠재적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적시에 진입할 수 있는지, 진입 자체가 실현 가능한지, 유효한지 등을 고려
- ④ 기술 진보 : 원가 하락, 신기술 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고려
- ⑤ 소비자 및 기타 사업자 :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유효한 시장경쟁 형성을 고려
- ⑥ 국민경제 발전 : 사회의 총체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국의 산업정책적 요인 고려
- ⑦ 예외 인정 : 경제적 효율성, 사회 공공이익에 부합, 회생불가기업 사유 등에 관한 내용을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입증하면 예외 사유 고려
- ⑧ 기타 : 단독효과* 및 협조효과** 고려

* 단독 효과(Unilateral Effects) : 결합 이후에 당사회사가 독자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능력이나 유인이 형성·강화되어 현저하게 경쟁을 저해할지 여부를 평가

** 협조효과(Coordinated Effects) : 기업결합이 경쟁을 크게 저해한 정도로 회사들이 행동을 일치시키거나 기존의 공조수준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을 평가

일각에서는 동 지침이 국제적인 모범관행을 반영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번 지침은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충분히 보충하지 못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2008년 8월 1일 중국이 반독점법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제정·시행하고 있는 기업결합 관련 법규는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을 비롯해 총 11개이다. 이는 EU 등 선진 경쟁당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자국 실정을 고려한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입법화한 것이다.

이런 입법환경과 우리기업의 주요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지침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해 향후 예상되는 경쟁법 집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기업에 관련된 M&A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시정조치 부과가 집중된 바 있어 우리기업의 주의가 요망된다.

인도 경쟁위원회, 새로운 기업결합 규정 발표

인도 경쟁위원회는 지난 2007년 개정된 경쟁법상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세부사항을 담은 새로운 기업결합 규정 [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 (Procedure in regard to the transaction of business relating to combinations) Regulations, 2011]을 제정하고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규정은 인도 경쟁법 상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해 심사기간, 신고의무 면제대상, 제출서류 등을 적시해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절차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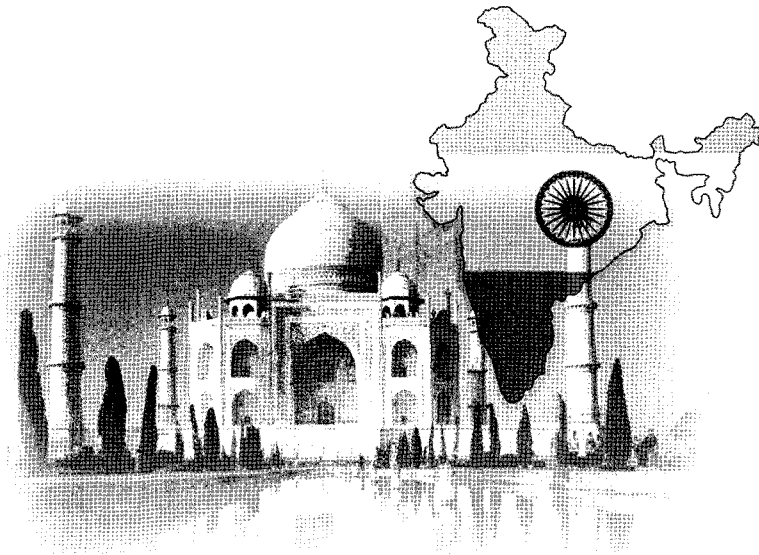
이 규정에 의하면, 간이신고(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자가 아니거나 원재료 의존관계가 없는 경우, 결합 후 점유율이 15% 미만(경쟁자인 경우), 25% 미만(원재료 의존관계인 경우)인 경우)은 30일 이내, 일반신고(간이신고대상이 아닌 기업결합이거나 간이신고대상이지만 위원회가 관련 시

장에서 경쟁제한효과 발생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인정한 경우는)는 2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또한 취득 후 보유지분이 15% 미만인 경우, 기(既) 보유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기업결합 등 10가지의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따른 조치사항(승인, 불승인, 수정승인)과 이에 대한 이의 제기절차, 간이 및 일반신고의 제출서류양식, 수수료(개정 전 100만~400만 루피에서, 5만(간이신고)~100만(일반신고) 루피로 감소) 등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의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인도의 기업결합 신고절차 개정내용, 특히 신고양식의 다양화 및 작성내용의 세분화 등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의 경쟁법 집행기관 단일화 경향

최근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쟁법 집행기관 단일화 동향을 정리해본다.

먼저 경쟁법 집행 모델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일원적 집행 구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지난 2010년 8월, 두 개의 기관으로 나누어진 경쟁법 집행체계를 통합해 하나의 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현재 공정거래청(OFT)과 경쟁위원회(CC)을 통합해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CMA)를 설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OFT와 CC는 2010년 경쟁법 전문지인 <Global Competition Review>에서 세계 5위권의 경쟁당국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명성이 있는 조직이지만 ① 경쟁법 관련 조직 운영의 유연성 및 적극성 향상 ② 중복을 제거해 공공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추구 ③ 기관 통합으로 인한 영향력 제고 ④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 제고 등을 위해 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지난 2010년 12월, 상원에서 3개의 경쟁법 집행기관을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쟁법 개정

안이 승인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독립기관인 경제보호위원회(CADE)와 법무부 소속인 경제검찰(SDE), 그리고 경제부 소속의 경제분석청(SEAE) 3개 기관을 통합해 심판부와 사무처(조사 수행)로 구성된 새로운 CADE로 구성하는 것이다.

프랑스 역시 지난 2008년 8월의 법 개정을 통해 두 개의 경쟁법 집행기관인 경쟁·소비자·부정행위방지총국(DGCCRF)과 경쟁평의회(Conseil de la concurrence)의 기능을 통합해 독립된 경쟁당국인 경쟁위원회(Autorite de la concurrence)를 설립했으며, 경쟁위원회는 2009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포르투갈에서는 2002년 하반기에 두 개의 경쟁법 집행기관인 경제부 소속이었던 무역·경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de and Competition)과 경쟁평의회(Competition Council)가 통합되어 독립된 경쟁당국인 Competition Authority가 설립됐으며, 2003년 3월부터 업무를 개시한 바 있다.



애플의 경쟁제한행위 관련 사건 동향

최근 iPod, iPhone, iPad의 잇단 성공을 통해 IT시장의 최강자로 급성장한 애플(Apple)사에 대해 경쟁법적 쟁점이 제기된 세계 각국의 사례를 상품별로 정리·분석해본다.

■ **iPhone** : 2007년 애플이 발표한 터치스크린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휴대전화, 미디어 재생기, 모바일 인터넷 등이 핵심 기능이다.

■ EU 집행위원회, iPhone의 수리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약관 조사

2010년 9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iPhone 수리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약관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지만, 애플이 관련 조항을 자진시정하자 사건을 종결했다. 집행위원회가 예비조사를 통해 문제 삼았던 iPhone의 약관조항은 ① iPhone의 수리는 구매국에서만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유럽 소비자들의 외국에서의 구매가 제한되고 시장이 분할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 ② iPhone 애플리케이션은 애플의 고유 프로그래밍 언어(Objective-C)와 개발 툴(SDK: Software Development Kit)을 통해서만 개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이는 애플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기기와의 경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애플은 ① EU 회원국에 대해 초국경적 수리보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는 언어 및 개발 툴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동 조항을 수정했다.

■ 프랑스 경쟁위원회, iPhone의 배타적 공급계약 중단 확약 수락

2010년 1월, 프랑스 경쟁위원회(Autorite de la concurrence)는 iPhone의 배타적 공급계약의 경쟁제한성 해소를 위해 애플과 Orange사가 제시한 확약(Commitment)을 수락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Orange는 프랑스 최대의 통신업체로, 애플은 프랑스 내에서 iPhone을 Orange에 대해서만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쟁위원회는 2008년 12월, Orange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iPhone의 높은 선호도를 고려할 때 배타적 계약이 통신업체들 간의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 판단하고, 다른 통신업체들에게도 iPhone을 공급하도록 하는 가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SFR, Bouygues Telecom 등 경쟁 통신업체들도 iPhone을 공급받게 됐다. 이어서 양사가 2009년 11월 제출한 ① 향후 3년간 iPhone의 배타적 계약 전면 유보 ② 동 기간 중 향후 출시 모델에 대해서는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타적 계약 체결 가능과 같은 내용의 확약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경쟁위원회가 최종 수락한 것이다.

■ **App Store** : 애플의 iPhone, iPad 등에 설치하는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의 판매·구입을 중개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애플리케이션의 App Store 등록 거부행위 조사

2009년 7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구글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인 Google Voice(사용자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해 무료로 음성통화와 SMS 전송 등을 할 수 있다)의 App Store 등록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애플과 AT&T에 질의서를 송부했다. 질의서의 내용에서는 애플의 Google Voice 등록 거부에 미국 내 iPhone 공급자이자 최대 무선통신사업자인 AT&T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는 Google Voice가 제



공하는 무료 서비스가 AT&T의 유료 서비스와 중복되어 장기적으로 수익원(收益原)을 잠식할 우려가 있어 애플이 이와 같은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Google Voice 등록 거부과정에 AT&T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사건은 종결됐다. 그 후 2010년 11월 애플은 Google Voice의 App Store 등록을 승인했다.

■ 독일 연방카르텔청, 애플리케이션 승인 지연행위 조사

2011년 6월,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독일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업체인 Simfy사가 App Store 등록을 요청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애플이 명시적인 이유 없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Simfy는 애플이 명확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승인을 지연한 것은 경쟁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Simfy는 EU 집행위원회에도 조사 개시를 신청할 예정이며, 유사한 경험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과 함께 애플리케이션 등록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iPad : 키보드나 마우스가 아닌 터치스크린을 주입력장치로 사용하는 애플의 태블릿 컴퓨터(Tablet Computer) 제품이다.

■ 미국 코네티컷주, 애플과 Amazon이 출판업체와 체결한 계약 조사

미국 코네티컷주 법무부는 2010년 8월, 대형 전자책(e-Book) 유통업체인 애플과 Amazon이 Macmillan, Simon & Schuster, Hachette, HarperCollins, Penguin사 등 출판업체들과 체결한 공급계약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개시했다. 애플과 Amazon은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는 출판업체들과의 계약에서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가격을 보장받기 위해 경쟁사에 제시된 거래조건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할 것을 보장하는 최혜국(Most-Favoured-Nation: MFN) 대우조항을 삽입한 바 있다. 코네티컷주 법무부는 이러한 최혜국대우 조항으로 인해 전자책에 대한 경쟁사 간의 최저가격 합의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비조사에 의하면 애플과 Amazon 등에서 다수 베스트셀러의 전자책 가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벨기에 경쟁당국, 애플의 디지털 출판물 판매조건 조사 착수 예정

벨기에 경쟁당국은 애플의 디지털 출판물 판매조건이 경쟁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2011년 1월, 벨기에 경제부 장관이 애플의 행위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부 장관은 애플이 iPad 등 혁신적인 플랫폼을 제공해 출판시장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부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성공이 남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은 애플이 최근 신문·잡지회사들에게 통보한 온라인 출판물에 대한 새로운 판매조건 중에서, 특히 향후 iPad 버전의 디지털 출판물을 발행하려는 출판사는 반드시 애플의 App Store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 경우 출판사는 30%의 판매수수료를 애플에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프린트 버전과 무료 iPad 버전을 결합한 판매를 금지한 조건으로, 이 경우에 프린트 버전과 디지털 버전을 원하는 독자들은 같은 내용의 문서 구독에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한다.

■ iTunes Store : 디지털 음악, 영상 등이 판매되는 애플의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판매 서비스이다.

■ 애플의 폐쇄적 DRM 정책으로 집단소송 피소

2005년 1월, 애플은 iTunes Store에서 다운로드한 음악파일을 자사가 생산한 기기에서만 재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Digital Rights Management: DRM)를 설정한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에 피소당했다. 이후 같은 내용의 소

송이 미국과 유럽의 법원에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iTunes Store에서 판매되는 음악파일은 'FairPlay' 라는 애플 자체 복제방지기술이 적용되어 타사의 기기에서 재생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소비자들은 이런 애플의 DRM 정책이 iTunes Store에서 다운로드한 음악파일과 iPod의 불법적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논란 끝에 애플은 2009년 2월 iTunes Store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에 대해 'DRM-Free'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제 소비자들은 iTunes Store에서 다운로드한 음악파일을 간단한 변환을 거쳐 다른 기기에서도 제한 없이 재생할 수 있게 됐다.

■ EU 집행위원회, 애플과 음반사들의 음원판매 지역제한 합의 조사

EU 집행위원회는 2007년 4월, 애플과 4개 대형 음반사인 EMI, Sony BMG, Universal, Warner 등이 iTunes Store를 통해 판매하는 디지털 음원의 구매지역을 각 국가로 제한하도록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송부했다. iTunes Store는 구매시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통해 거주국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집행위원회는 소비자의 음원 선택권을 침해한 동 합의가 EC 조약 제81조 상의 경쟁제한적 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동 합의에 의해 영국 소비자들은 여타 유럽국가 소비자들보다 약 10%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영국의 iTunes Store에서 음원을 구입해야만 했다. 결국, 2008년 1월 애플이 6개월 이내에 유럽지역 iTunes Store에서 판매되는 음원의 가격을 통일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 미국 법무부, 애플의 음반사에 대한 압력행사행위 조사

미국 법무부(DOJ)가 2010년 5월, 애플이 디지털 음악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반사들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Amazon의 'MP3 Daily Deal'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고한 행위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MP3 Daily Deal'이란 특정 음반의 공식 발매일에 앞서 하루 동안 Amazon이 독점적으로 해당 음반의 음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모션이었다. 애플이 경쟁업체인 Amazon의 프로모션에 참여한 음반사들에게 iTunes Store 상에서 마케팅 지원을 철회하는 등의 제재를 가했다는 혐의가 주된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시장조사기관 NPD Group에 의하면, 애플은 미국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지만 2위인 Amazon은 불과 8%만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Mac** : 애플이 생산·판매하는 개인용 컴퓨터(PC)로, 1984년 처음 출시된 Mac(Macintosh의 약어)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와 마우스를 이용한 환경을 도입해 상업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PC이다.

■ Psystar, 애플의 컴퓨터-운영체제 판매를 끼워팔기 혐의로 제소

2008년 8월, Psystar사는 애플이 컴퓨터 운영체제(Mac OS X)를 자사의 컴퓨터(Mac)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약관 및 소프트웨어 보안설정행위에 대해 끼워팔기 혐의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는 애플이 Psystar의 Open Computer(Mac 복제컴퓨터) 생산·판매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제소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Psystar는 Mac OS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Mac을 함께 구입해야만 하도록 한 애플의 행위가 Mac OS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Mac OS가 여타 OS들(Windows나 Linux)과 구별되는 독립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했다.